

제37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8월20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결산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 가. 환경부 소관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11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양해를 구해서 국무회의 직후에 참석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을 포함하여 3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있을 정기국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감사 그리고 예

산심사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화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입니다.
진달래 입법조사관입니다.
황진솔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09시07분)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의 환경분야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12만 대를 조기 폐차하였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3만 2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2043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 안전과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정수장 10개소와 수도관 431km를 개량하였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상수도 확충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6월 환경부로 일원화된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댐 안전성을 강화하고 광

역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총 6조 7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5.1%인 5조 16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6조 4972억 원 대비 97.5%인 6조 334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736억 원은 이월하고 89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1064억 원을 수납하여 8954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76억 원을 이월하고 207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362억 원을 수납하여 179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1억 원을 이월하고 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향후 환경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현안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박용규 4대강조사평가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제가 특별히 양해는 해 드리는데 너무 상세히 설명하지 말고 핵심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재원현황입니다.

재원 규모는 7조 5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규모는 7조 4768억 원이며 이 중에 예산은 6조 3343억 원입니다. 기금은 1조 1425억 원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7쪽, 재원 구성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지금 환특예산이 86.1%를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조 73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1747억 원 감소한 5조 1669억 원이며 수납률은 85.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47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50억 원이 감소한 8589억 원입니다.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5%인 6조 334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전년과 동일한 97.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분야별 지출현황입니다.

환경부 예산은 42%가 하수관거 등 상하수도 분야에 지출되었고 미세먼지 대책 등 대기환경 분야에 12.7%, 자연보전 분야에 9.5%를 지출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특 세입은 자체 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85.1%인 5조 12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 세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1조 7234억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3조 4063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5억 원이며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환특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의 97.1%인 4조 7696억 원을 상하수도 분야 수질보전, 자연보전 분야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7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16쪽, 17쪽에 환특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작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서 46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출연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41억 원, 소속기관 간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4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쪽, 19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환특회계 세입·세출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세출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연례적 결산의 지적사항이었던 자금 없는 예산의 이·불용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21쪽,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으로 10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99.1%인 7916억 원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지출하였고 사업 취소 등으로 6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쪽, 이체내역입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소관 예산 166억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3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4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전액을 먼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21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의 99.7%인 5542억 원을 기후·대기 분야의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5쪽, 이체 및 전용 내역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업무 이관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예산 125억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유재산의 토지대여료 등 8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의 99.7%인 3조 54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96.2%인 3조 4109억 원은 환특회계와 균특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자원 분야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등으로 61억 원이 이월되었고 5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8쪽, 이체 및 전용 내역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국무조정실·국토부 소관 예산 1461억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9쪽은 이월액·불용액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 등 환경부 소관 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조 1426억 원으로 전년보다 1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주민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징수결정액의 92.7%인 1조 106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의 50%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35%를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33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3.1%인 6157억 원을 수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비로 447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 중 136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등 16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은 1678억 원입니다.

34쪽의 낙동강수계기금, 35쪽의 금강수계기금, 36쪽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은 한강기금과 규모만 상이하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95.8%인 36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지출의 경우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기금사업비로 179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여유자금은 183억 원입니다.

39쪽, 국유재산 및 채권 결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 말 현재 환경부 국유재산은 15조 3679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99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부 소관의 댐, 상수도시설 등 국유재산 11조 8490억 원이 이관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채권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채권은 1조 6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환특회계채권의 주요 내역은 용자상환잔액 6720억 원,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8666억 원입니다.

41쪽, 재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말 자산은 11조 4157억 원으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소관 자산을 이체받아 전년 대비 5조 807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조 8441억 원이 증가한 11조 3240억 원입니다.

42쪽 재정운영표, 43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고용노동입법 등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일터에서의 삶의 질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총 6조 660억 원 중 92.4%인 5조 60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을 합쳐 사업비 19조 302억 원 중 97.0%인 18조 455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별 지출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은 11조 5778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5조 9509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4267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3617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3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직, 채용, 근속 등 취업 단계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출산,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하였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 인상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7년에 비해 50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해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발달훈련센터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어 등 신기술 관련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신기술·고숙련 훈련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준수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운영하였

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동시장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고위험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그간의 고용노동정책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소중한 조언들은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기초실장 나오셔서 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안경덕** 기획조정실장 안경덕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조 6558억 원이며 수납액은 27조 6924억 원으로 수납률은 84.8%입니다.

먼저 예산 징수결정액은 1151억 원이며 수납액은 687억 원으로 수납률은 59.7%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4.6%p 하락하였습니다.

기금 징수결정액은 32조 5407억 원이며 수납액은 27조 6237억 원으로 수납률은 84.9%입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예산현액은 25조 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185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24조 61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

률은 95.9%입니다.

예산현액은 6조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987억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5조 6065억 원이며 집행률은 92.4%입니다.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 계획 현액은 19조 302억 원이며 지출액은 18조 4554억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7쪽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0억 원이고 수납액은 680억 원이며 수납률은 61.8%로 전년 대비 2.9%p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19억 원으로 체납자 채력 부족 및 거소불명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조 9025억 원 중 5조 4431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은 고용정책사업에 4조 446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1%입니다.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2조 546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6%이며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에 893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499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72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근로조건보호사업에 24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입니다. 이 중 최저임금 준수, 장시간 근로 개선 등에 144억 원, 사업장 감독 등 근로감독 행정 지원에 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협력사업에 1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4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9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지원기간 감소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4273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임용절차 지연 등으로 인건비에서 165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억 원 중 수납액은 3억 원으로 수납률은 23.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9억 원 전액을 진폐위로금 및 건강진단 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7억 원 중 수납액은 4

억 원으로 수납률은 10.8%이며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감소로 전년 대비 77.8%p 하락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825억 원 전액을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기금별 결산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조 8455억 원이고 수납액은 14조 4724억 원으로 수납률은 91.3%입니다. 미수납액은 1조 3251억 원으로 납기미도래, 체납자 채력 부족 및 거소불명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15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7조 2702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 현액 12조 856억 원 중 11조 577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을 보고드리면 고용정책사업에 7조 89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 지급에 6조 684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20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2조 66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고용평등사업에 1조 496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에 1조 3399억 원을, 장년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지원에 140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불용액은 5012억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실업급여사업 집행잔액 1523억 원과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서 2379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조 3783억 원이고 수납액은 10조 778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조 5075억 원입니다.

20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4조 9573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 현액 5조 9677억 원 중 5조 95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은 산재보험사업에 5조 2071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보험급여 지급에 5조 339억 원, 산재근로자 재활 지원에 8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34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재기금 적립금 규모는 17조 8912억 원입니다.

다음, 22쪽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698억 원이고 수납액은 8137억 원이며 수납률은 30.5%입니다.

미수납액은 1조 8083억 원으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압류·체납처분 절차 진행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24쪽,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조 4485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 현액 4629억 원 중 426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을 보고드리면 근로조건보호 사업에 412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체불근로자 채당금 지급에 3740억 원,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지원에 25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712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510억 원이며 수납률은 98.4%입니다.

26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계획 현액 3715억 원 중 36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은 장애인고용증진사업에 30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고용장려금 지급에 1895억 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3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59억 원이고 수납액은 3082억 원으로 수납률은 82.0%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였습니다.

28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계획 현액 1426억 원 중 13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1230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950억 원, 근로복지지원에 1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재무결산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예보정확도 제고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지진 감시 및 위험기상 관측 인프라 구축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 국민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지상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첨단 기상레이더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위험기상 감시 역량 및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 송출을 시작하였고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재난문자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국민 안전 중심의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습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중심 기상서비스를 위해 기상실황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집중호우 대응에 적합한 호우특보 기준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기상위성 천리안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정규 서비스를 개시하여 위험기상 조기 탐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6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8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이며 당초 예산액 397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81억 원 증액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12억 원 증가한 406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3847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한 113억 원이며 불용액은 99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항공기상 및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등 29억 원이며 대행역무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정산금은 28억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의 지체상금 일부 미납액 14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2008년 대만국적 항공사의 부도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채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가태풍센터 운영 등 기상예보사업에 78억 원, 기상·해양·고층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837억 원, 기상기술 연구 등 기상연구사업에 949억 원 등 총 38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과학관 및 박물관 청사 및 전시관의 구축 지연으로 72억 원, 차기 종합기상정보통신시스템 도입의 지연으로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1억 원 등 총 9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용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용액은 총 2억 7000만 원으로 슈퍼컴퓨터의 사용량 및 신규 전산장비 증가로 전기요금 지급 부족액 2억 1000만 원,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추심 배상금 지급을 위해 6000만 원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전용 내역으로서 전용액은 총 21억 원으로 개인정보 사고 예방 소프트웨어 구매 부족액 3억 원,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액 1억,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12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21쪽 이월액 주요내역, 23쪽 불용액 주요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의 생산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으로 75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종료사업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이월액과 23쪽 불용액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은 5887억 원이며 물품은 1429억 원이고 채권은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이후 재무결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별 집행률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식 윤광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먼저 물관리 부문 중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절차와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집행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수역녹조발생대응사업에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도입 초기 오류인계정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보조금의 재재이월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문에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성과지표는 대집행을 통해 정부가 처리한 양만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원인자나 공제조합 등이 처리한 양은 제외시키고 있는바 자체 처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중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해를 넘겨 완료되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모시기를 앞당겨 타당성조사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대기 부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더라도 다시 경유차를 구매

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자연보전 부문 중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사업은 전국의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 추진현황을 재점검하고, 사업 수행 시 생태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은 위탁수행자인 환경산업기술원의 실집행 관련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체계 및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에서는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집행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연도 내에 연구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 및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건강피해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피해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대강 수계기금은 각 수계별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이후의 신규사업 선정 등 환류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정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사업에 대한 목적예비비 및 국립공원 환경정화사업 및 공동주택의 자원재활용률 제고 단기일자리사업에 대한 일반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목적예비비 중 일부 지역별 실집행을 저조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기상청 소관입니다.

미래유망 민간서비스 성장기술 개발사업은 과제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민간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 과제를 보다 확대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청사시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기상과학관 건립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상과학관 건립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조직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계부가금 등의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대상이 법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정책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생계 부담 등으로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저조하므로 중·장년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은 높은 편이나 참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중도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고용유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에 노사정책사업 중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용역, 공사착수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 근로조건개선지원의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정해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민간조정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정해결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중에 4쪽, 고용정책사업 중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69.7%로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해 집행률이 낮고, 특히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사업은 34.9%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사전계획 없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사업 중 산재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산재신청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므로 산재보험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등 출퇴근재해의 산재신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의 세사업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에서 사업의 수혜 대상이 2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의 불편, 관리실태 미흡, 신규 사업장 발굴 저조 등으로 인해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장 및 민간 측정·특검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에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입니다.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에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은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선임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소액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의 필

요성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점진적인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은 성과지표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예산 집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과 선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09시57분)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청원은 입법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도의 순서는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몇 분이시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상 위원 대구 달서 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안 나오셔서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입니까, 9월 하순 예정이던 해외취업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을 11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직업박람회가 일본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시켜야 되는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서요 기간을 조금 연기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아니, 최근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 것조차 연기하는 것은 정말 속 좁은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개최된 바 있는데 참여한 184개 기업 중 일본기업이 115개사로 62.5% 된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맞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번에는 일본기업이 몇 %였습니까? 이번 9월에는 일본기업 참여도가 몇 %였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120개 중에서 90여 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한 칠팔십%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강효상 위원 지금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용노

동부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청와대의 지시나 협의를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저희들이 이 취업행사를 주관하는 KOTRA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박람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K-Move라든가……

○**강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셨느냐는 그 대답을……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협의 안 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제 시간을,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답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답변 기회를.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그런데 지금 일본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우선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돌연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외눈박이 행정이다, 지금 일본에 많이 취업을 해야…… 저도 국익이 증진해야 된다는 것도 일본 경제체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분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본수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한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 좁은, 이것이 무슨 보복행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세요. 도쿄올림픽은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글로벌 취업박람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연 연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수지 확충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참 나쁜 속 좁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11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강효상 위원**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이미 연기된 것은 연기돼 있는 상태이고요. 11월 달에 좀 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효상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 놓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취업박람회 연기를 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아베 총리가 참 부적절한,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의연하게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양질의 기업에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일본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많이 받아 오고 그것이 극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탁상행정, 청와대 눈치보기, 이런 정치적인 결정에 행정부까지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시간제 완화가 지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지금 주 52시간 시간제 시행시기를 1, 2년 연기하자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 52시간, 저도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처벌규정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R&D라든지 첨단기술분야라든지 좀 제한된 업종에서만이라도 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지금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제재하는 쇼만 하고 실질적으로 영풍석포제련소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환경을, 시설을 개선했다는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 대체 이게 솜방망이 처벌에다가 영풍제련소는 법적인 대응만 해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끄는데 지금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문제가 시간만 끌고 아무 실질적인 개선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로펌이 어디인지 자세한 사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환경부차관 박천규 우선 간단히 먼저 말씀 올리자면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 단속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기관이 저희 환경부가 아니고 경북도청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라든가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행위가 다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셔서 영풍석포제련소를 압박을 하고 여론을 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발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영풍석포제련소가 지금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제가 듣기로는 대주주가 아주 완고하고 개선인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엄히 다스리셔야지요. 그것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하면 그러면 뭐하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까? 실질적인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위원님, 저도 답변을 아까……

○강효상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

○위원장대리 한정애 차관님, 답변……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우선 먼저 말씀하신 취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

려했다가보다도 최근 분위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기를 하되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박람회 자체는 연기를 했지만 K-Move라든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통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물품들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통해서 그런 제품을, 대체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R&D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업무량이 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재난의 형태로 보고 특별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를 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저희 지방관서를 통해서 특별근로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부차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코드인사, 내 편 네 편 가르치는 편 가르기 인사 문제로 어제 일부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사 보셨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코드가 다른 국민들은 적입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어제 보도된 내용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에 저희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에서 보도를 한 기자가 보통은 취재한 기자 외에 또 확인하는,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한 행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나씩 그렇게, 지금 전임 장관이 수사까지 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해명하면 문재인 정부 인사는 끝날 때까지 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그런 해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보도가 됐으니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에 지원했던 경남대 류재용 교수 아시잖아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보도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14개월 만에 업무부적합 판정으로 불합격 통지 이메일 보냈지요, 예?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환경공학 전공했습니다. 25년 동안 환경기술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또 그 응했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5년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업무부적합입니까? 맞아요? 업무부적합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원 내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본부장 자리는, 친환경안전본부장, 제가 이름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었어요.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업무부적합성이 있어서 임명했어요? 이것 지금 다 전임 장관이 내정해서 청와대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14개월 동안을 미적대다가 나중에 불합격 통지한다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이걸 납득할 국민들이 있겠어요? 아니, 아까 업무부적합 이야기하니까 무슨 다른 똥단지 같은 말씀하시는데 왜 14개월이나 미적됐습니까?

내가 차관의 무슨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자기 편 아닌 자기 코드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게 지금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하고…… 아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냐 이 말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지금 도처에서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

령 지금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자자해요. 차관은 그런 말씀 안 들어보세요? 지금 인터넷·SNS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녀요. 문재인 대통령 이럴 줄 몰랐다고 말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 임명하는 것은 4개월 만에 임명하고 불합격 통지는 14개월 만에 통지해요? 이게 맞아요, 지금?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정농단,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촛불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 세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정부 똑같이 따라서 해요? 아이참, 진짜……

한 가지만 더요.

금년 1월에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고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라고 해 가지고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는 조기 폐지하고 신규 원전, 신규 석탄발전 건설 금지하기로 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신규 원전은 아직……

○**김동철 위원** 아니, 신규 석탄발전소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계획에서……

○**김동철 위원**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기로, LNG로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노후 석탄발전소 중에서도 원래 예정됐던 기간보다 더 앞당겨서 폐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랬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18일 날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발표한 것 보니까 석탄 소비량이 2.4% 증가했어요. 이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그 통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산업부에서 만들고 있어서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지금……

○**환경부차관 박천규** 언론은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확인한 환경부 당사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기사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황석태** 담당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김동철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황석태** 예, 맞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황석태** 예.

○**김동철 위원** 외국 기업은 확인을 해 가지고 발표까지 했는데, 석유환산톤으로 8820만TOE라고 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까지 했는데 환경부는 이제 확인 중입니까?

아무튼 들어가시고, 차관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203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37% 달성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로드맵을 보완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롤링 플랜(rolling plan)이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단순하게 질문할게요.

2030년까지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폭적으로 석탄을 줄여도 이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석탄 사용량을 늘려 가고 있으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냐고요. 이것 국민 기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완전히 매여 가지고, 탈원전에 탈석탄까지 주장은 하지만 결국 석탄은 탈원전보다도 더 하위개념이라고 봐 가지고 지금 석탄 늘려서 이런 지경에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꼭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 잠시 나와 보시지요.

이사장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산불은 언제 가장 많이 나지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건조 시기에 제일

많이 납니다.

○**신보라 위원** 건조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봄철과 가을철입니다.

○**신보라 위원** 봄철과 가을철.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가을철도 9월에서 10월 이 사이가 가장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60% 가까이가 봄철에 집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에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산불감시원 예비비가 언제 쓰였지요? 11월과 12월에 쓰였지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필요한 시기입니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필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방금 봄철에 산불이 집중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1월, 12월에 보면……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인데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15~2017년 산불은 다 11월, 12월을 비켜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편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 불가피성.

그런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3억 9000이었는데 그것의 3배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것도 11월, 12월에, 대체적으로 산불이 나지 않는 기간에. 이런 예비비 편성이 맞습니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해가 산불이 좀 많이 난 해였습니다.

○**신보라 위원** 산불 재난 보면 2017년도 자료만 보니까 주의 단계로 격상됐었는데 그게 201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7년 당시에 예비비 편성하셨어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

○**신보라 위원** 예비비 편성 안 하셨지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급하다면서요? 이런 급한 상황에는 갑자기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된다면가요? 2017년에 예비비 편성

안 하셨지요?

그래서 2018년 11월, 12월에 산불이 다른 해보다 유독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데 3배나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냐 되느냐 말이지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단기일자리 예산 확충해서 통계 조작하려고 하나니까 뭐가 필요하나 봤더니 산불감시원, 국립공원 청소원, 해양쓰레기 수거 이런 것에 본예산에 넘쳐 나는 예비비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비비 편성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

○임이자 위원 인정을 하세요, 그냥. 고개만 꼬덕꼬덕하고 계셔.

○신보라 위원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립공원지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 예산 요건도 있습니다. 지킴이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555명이나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이 쓰레기 수거, 순찰, 감시, 불법행위 단속 이런 예비비 인력 활동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활동인데도 예비비 편성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

○신보라 위원 저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라고 보고, 그렇지요?

아까도 산불 편성에 3배나 가까이 예비비 편성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인정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좀……

○신보라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

○신보라 위원 이사장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국립공원공단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결재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신보라 위원 예비비 편성 요건, 예측 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보충성이라는 것 아시지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산불 많이

납니까? 그렇게 쓸 예산에 3배나 넘는 예비비 편성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실은 산불이, 가을 우수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산불에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위원 아니요, 국립공원공단에 나와 있는 것에도 11월, 12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때가 3년이나 됩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3배나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 불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승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적 부분에 대한 감사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고용보험기금이 DLS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신보라 위원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7월에 알게 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보험기금의 584억 원을 파생펀드 상품 2개에 투자했는데 476억 원……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80% 이상의 원금을 날렸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 DLS 펀드 상품이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품인데 이 기금운용사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상품의 고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신보라 위원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고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개별 상품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기금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

하는 기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걸 책임지고 운용하셔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인데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 전가성 발언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가 맡긴 고용보험기금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는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개별 상품에 대해서 할 때도 상품의 운용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상품을, 몇백 개씩 되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어떤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어느 정도……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으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아니……

○신보라 **위원** 이런 고위험성 파생상품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금 손실이 큰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 DLS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결국 개인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한 손실은 지금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저희들이 이제 한국투자……

○신보라 **위원** 책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아니, 성과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 상품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높은 것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대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이런 내부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고요.

다만 운용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문가도 같이 끼워 가지고 이런 위험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보라 **위원** 아시겠지만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기금운용에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세밀하게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상품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위원장대리 **한정애** 한국투자증권은 잘했다고,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금운용사로 다시 선정되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그때 선정되는 시점에서는 이 상품이 손실이 없었고요. 손실은 이번 7월 달에 확인이 된 거고 다시 결정된 것은……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애초에 그런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국민연금기금도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물론 상품들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큰 것과 크지 않은 것 종류별로는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는 안 담되, 나누어서 담기는 하되 어떤 종류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그런 부분들은 다시 체크해 가지고 제도적인……

○위원장대리 **한정애** 개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이.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님,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석탄 사용량이 늘었는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저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아마 차관께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의 하나가 석탄 사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환경부도 이런 보도가 나오면 민감성을 조금 높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기록에도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 ‘우리나라 2018년도 석탄소비량이 2017년도 대비 2.4% 증가했다’ 이게 영국 에너지그룹 BP의 자료에 의한 것인데 이걸 맞아요. 산업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걸 맞는데, 그러면 왜 이게 늘어났느냐 이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준 게 아마 11개쯤 될 겁니다. 그게 최근 들어와서 가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석탄소비량은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느냐라고 보면 줄었어요. 석탄발전으로 인한 석탄발전량은 좀 늘었고 석탄소비량도 늘었는데 비중은 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들을, 발전 수단들을 지금 확충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탈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걸 누차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발전량이 좀 줄었던 것은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서, 노후설비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비기간 동안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량이 좀 줄었던 것이고 이게 다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줄었다든지 석탄발전이 늘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지적은 다 가짜 뉴스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걸 환경부의 소관업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석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다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도에 놓고 보면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많이 줄었잖아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노후 석탄발전소에 저감장치도 강화했고 또 일정 시기에는 가동까지 중단해 가면서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 조치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네요.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미세먼지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곧 나와야 될 거예요. 이제 겨울 되면 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터인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선 선박 부분에 미세먼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친환경 가스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무슨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진 자체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이대로 하라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환경부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건지 그걸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해양에서 나오는 생물들을 못 쓰게 될 거예요. 못 먹게 될 거예요, 어류나 이런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 등등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옛날에 시행령에서도 있던 걸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넣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종이컵 이런 거는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다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쪽에도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해서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렇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걸 3개월 단위로 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인가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건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이분들의 노동시간을, 특별근로를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건강을 체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수시로, 수시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생기게 되면 곤란하니까.

삼성SDI에서는 수석연구원인가 한 사람이 급성백혈병으로 죽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김태년 위원**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한다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답변 좀 드릴까요?

○**김태년 위원**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일단 이상돈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임이자 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세요.

○**이상돈 위원** 환경부차관님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또 어떤 일간지에 크게 났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3명이 최종으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후보자가, 말하자면 최종 후보자가 무슨 인사 검증에 의해서 보류가 됐나요, 그 당시에?

○**환경부차관 박천규** 제가 알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 분이 추천됐고 그중에 인사 검증 과정 중에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좀……

○**이상돈 위원** 한 분이, 내부에서 하신 분이 비극적인,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환경부차관 박천규** 그래서 그 문제……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인사를, 그 시점에서 다시 재공고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1년씩 두고 있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여기 문제제기했던 류 교수 같은데 이걸 행정을 너무 방만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그때 재공고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극단적 선택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 동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 내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후임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상황은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낸 보도자료, 언론에 낸 해명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장관의 측근을 임명하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본인 사찰, 본인의 인사에서 뒷조사 같은 것 한 적이 없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사 하는 자체가 너무 원칙에 벗어나고 미숙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기서 빨리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지 이걸 이렇게까지 지연시킨 것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술원에서 어떻게 보면…… R&D 담당 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시간이 좀 더 지체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공원

법 개정 문제가 환경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처 간 협의가 잘 안 됐는지 이게 지금 담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기존의 자연공원법이 국립공원 위원회, 공원위원회의 구성 문제랄까 굉장히 해묵은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너무 지연돼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는 못 다루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환경부 자체가 이 문제는 너무 안이하 다 그럴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서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설악산 문제 같은 게 계속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고 또 그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또는 환경…… 주로 환경보전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현재 자연공원법에 포함돼 있는 용도지구 같은 것이 예를 들면 개발을 너무 쉽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현황까지 와 있는지 이것도 좀…… 의지가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부처 내부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분야는 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위원님,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이번에는 관철시켜서 그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달력 볼 것 같으면 한 달마다 무슨 무슨 날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념일이 없다는 얘기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그나마 진일보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1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예산·결산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2018년도 19조 2312억 원이 투입됐고 작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사업도 183개에 달했습니

다. 그런데 문 정부의 일자리사업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107만 70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147만 6000명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 있으나 단기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고 나라 경제의 중심인 삼사십 대 고용창출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도 증가폭이 아주 작습니다. 20대부터 50대 전 연령의 일자리를 합한 것보다 60대 일자리 증가수가 많습니다. 물론 60대 노인 일자리도 늘어야지요.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을 따진다면 20·30·40대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건전한 일자리 증가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이것을 계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또 자꾸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악용하는, 규제를 악용하는 현상까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저보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일자리안정자금은 4272억 원이 불용되었고 월별 집행률도 보면 상반기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가 또 11월까지 약 60%에 미달하다가 한 달 사이 12월에 갑자기 25%p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만기를 앞두고, 예산·결산을 앞두고 급조한 흔적이 두드러집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부조리한 집행 과정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랏돈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조건도 안 되는 곳에 퍼줘서 내년에 환수파티 할 것이다’ ‘이따위로 할 거면 근로복지공단 앞에 줄 세워 돈을 주면 된다’는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부정수급 사항도 지금 2019년 6월 5일 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발표한 것에 따라도 부정수급 규모가 총 553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550여억 원에 달한 돈이 부정으로, 이게 국민혈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자리안정자금 실태에 대해서 차관님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답변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풍석포제련소, 추가로 환경부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환경부 점검에서 지난 4월에 영풍석포제련소가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지금 조업정지가 이행이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강효상 위원** 소송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석포제련소가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1868건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고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 허용기준을 19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왔지만 조작을 했는데 실측값의 1405분의 1로 축소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환경부가 또 지난 3월부터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토양, 산림, 대기, 수질, 퇴적물 등 6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차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환경부가 지난 4월 기동단속반 조사로 인해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유출 조사 연구용역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환경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 아까 조작한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아주 노후화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주주가, 장형진 회장이 물러나고 지금 월급 바지사장을 앞세워 놓고 있는데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 조사를 하셨는지, 했다면 지금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위원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정수급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했던 553억 원을 환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라기보다는 과오납,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이 구분되는데 하나는 월평균 보수 기준에 의해

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2019년 3월이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실 부적정한 월평균 보수액을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2019년 3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상 불가피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가보다는 과오납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환수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229억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 특수관계인은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사전검증이 되는데 동거를 하지 않는 친족 같은 경우는 대법원 자료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게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늦게 확인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한 번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주는데 퇴사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영세 사업주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부정수급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얼마가 있는지 환수액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처분을 내리고 환수할 계획입니다.

9월 달까지는 그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지급받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상계하는 형태를 하고 분할해서 상계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려고 합니다. 폐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처분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형태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 위원** 폐업이나 피보험 자격 상실된 자도 99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그러니까 피보험 자격…… 보통은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예컨대 7월 달에 퇴사를 했으면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월 달 가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분이 더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받고 있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 받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지급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계해 가지고, 분할해서 상계해서 저희들이 지급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은……

○강효상 위원 디테일은 고용부가 알아서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거시적으로 삼사십 대 취업자 감소한 것,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위원님, 20대는……

○강효상 위원 20대 2만 8000명 이것은 미미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어쨌든 연령별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지만 20대 청년은 사실 고용률이 최고 수준이고요. 60대를 넘어가는 부분은 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엄연히 많아서 좀 늘고, 다만 40대는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경기, 제조업의 구조조정 부분하고 또 40대 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서, 어쨌든 40대의 제조업을 다시……

○강효상 위원 박근혜정부 때도 제조업 어려웠고요, 인구 구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심화가 되느냐 이겁니다. 일을 똑바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거시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무원들 월급 받으면서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은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재 청문이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경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 개최 후에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기 쪽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기 쪽에서도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소라든가 오염 농도도 저희들이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회사 이름은 발표하지 않았습지만 그 내용까지 다 같이 발표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연 4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검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그대로 바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의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입니다. 2021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과 그다음에 상류환경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6개 분야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효상 위원 행정처분,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행정처분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고발이라든지 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 개선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대체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부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의 누구십니까?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대변인입니다. 김동진입니다.

○임이자 위원 대변인께서는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 총계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원칙에 대해서?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임이자 위원 내용이 뭐지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

○**임이자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제가 자세한 규정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기억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 관련돼 갖고 왜 이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신데 이 부분까지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공무원 맞으시지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조차 답변을 못 하세요?

별정직 공무원이십니까?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

○**임이자 위원** 들어가세요.

차관님,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을 맞춰 놓고 보통은 회계연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회계연도 이내에 세입·세출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칙은 국가재정의 임의적인 팽창과 그다음에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임이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세출예산을 갖다가 이월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마는 이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해 놨는데, 세출예산 이월이 아주 무방비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변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생 차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차관님이 답변할 부분도 아닌데, 차관님이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하시겠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관련돼 갖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사업 이월 관련돼 갖고 지적을 할 것이니까……

대변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에 관여를 했습

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미리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본인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 관련된 부분이고 홍보 콘텐츠 관련돼서 입찰을 공고 내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사업 내용은 저희 소관이지만 구체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 부서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 회계 부서를 통해서 집행이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과제 선정 국민 참여 캠페인’ 이 사업 아시지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제2회 환경 단편영화 공모 및 영화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정책들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금년 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2019년 사업으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자, 금년도 사업인데 어떻게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올 수가 있지요? 금년도 사업인데, 계약 체결도 금년 1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이게 넘어올 수 있는나 이 말입니다.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아마 작년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문제가 됐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부대변인 김동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들어가시고요.

차관님, 담당 대변인께서 알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정책과제 선정 및 국민 참여 캠페인’ 이 사업은 2019년 1월 17일부터 2019년 3월 30일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월사업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언제 했느냐 하면 1월 17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제2회 환경 단편영화 공모 및 영화제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1월 2일부터 9월 30일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은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갖다가, ‘정책과제 선정 및 국민 참여 캠페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8월달 10월달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왜 굳이 2018년 12월 14일 날 공모해서 1월로 넘겨 갖고 계약 체결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겨 놓느냐 이겁니다.

이게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지적은 환경부의 홍보시스템 구축 관련돼 가지고 한 사례만 뽑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부·노동부·기상청 다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향후에는 2021년도 예산 심의 때는 반드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당해 사업이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세요! 왜 이걸 은근슬쩍 회계·결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슬쩍슬쩍 넘겨 놓습니까? 앞으로 이건 분명히 아주 꼼꼼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조와 제17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에 대해서 엄연히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 자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자체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향후 환경부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왜 답변이 잘 안 됩니까?

○임이자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오늘 정부부처도 그렇고 담당 국장 해당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을 못 하시고, 산하기관장도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시고……

○임이자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

를 보여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왜들 이러십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인사이드가 좀 갖기는 해도 인사이드를 하면 정확하게 인수인계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진행되는지, 진행 중인지, 무엇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인수인계도 안 하고 인사 발령 나면 그냥 다 가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월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 이월이 가능한데, 그 사유라든가 그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라리 지금 차관님 답변 안 한만 못하게 됐는데요. 홍보 관련돼 갖고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월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홍보 관련돼서만 나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꼭 반드시 세출예산에 이월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시스템 구축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충분히 그해 연도에 앞으로 부지런히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은근슬쩍 국가재정법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이것을 결산의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넘어간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조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향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왕왕 발생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장차관계서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국장 또는 산하기관장께서 해당 기관이나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은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고용부차관님, 지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징수율이 고용보험 징수율은 89.7%, 산재보험 징수율은 86.1%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정부도 그렇고 관계부처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던 이유가 통합 징수해서 징수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징수율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 징수율에 해당될 정도로는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체납·미납……

4대 보험 중에 이렇게 골라 가지고 이 2개만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것은 4대 보험 통합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올릴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설훈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장님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효 상	김 동 철	김 태 년	김 학 용
문 진 국	설 훈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윤 광 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조 명 래		
차	관	박 천 규		

기 획 조 정 실 장	박 광 석
생활환경정책실장	유 제 철
물 통합 정책 국 장	김 영 훈
물 환경 정책 국 장	박 미 자
수 자원 정책 국 장	박 하 준
대 변 인	김 동 진
감 사 관	김 영 석
정 책 기 획 관	주 대 영
자연보전정책관	이 호 중
자원순환정책관	이 영 기
환경경제정책관	김 동 구
대기환경정책관	김 한 승
기후변화정책관	황 석 태
환경보건정책관	하 미 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단 장	홍 정 기
조사·평가지원관	박 용 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나 정 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 승 도
직 무 대 리	배 연 재
국립생물자원관장	배 병 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류 연 기
화학물질안전원장	류 동 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홍 수 동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 준 영
직 무 대 리	권 경 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권 창 기
국립공원공단이사장	박 용 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서 주 원
직 무 대 리	서 민 환
국립생태원장	선 계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남 광 우
사 장	정 성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서 정 태
한국상하수도협회	
상 근 부 회 장	남 광 우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정 성 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주)위터웨이플러스	
사 장	
기상청	
청 장	김 중 석
차 장	최 흥 진
기 획 조 정 관	신 도 식
예 보 국 장	전 준 모
관 측 기 반 국 장	나 득 균
기 후 과 학 국 장	김 남 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 금 란

지진화산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직업능력정책국장
 통합고용정책국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공공노사정책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장
 이
 김
 김
 이
 주
 이
 류
 홍
 이
 임
 안
 나
 박
 장
 송
 박
 김
 박
 선
 김
 김
 이
 김
 박
 김
 김
 권
 이
 문
 박
 박
 윤
 송
 심
 박
 김
 조
 이
 이
 이

동
 동
 영
 현
 정
 상
 재
 찬
 성
 재
 임
 안
 나
 박
 장
 송
 박
 김
 박
 선
 김
 김
 이
 김
 박
 김
 김
 권
 이
 문
 박
 박
 윤
 송
 심
 박
 김
 조
 이
 이
 이

언
 규
 동
 경
 환
 원
 원
 수
 유
 갑
 서
 경
 영
 화
 신
 흥
 영
 덕
 준
 우
 대
 영
 정
 호
 중
 필
 석
 선
 섭
 수
 현
 성
 준
 식
 덕
 현
 우
 용
 만
 관
 흥
 행
 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장
 한국잡월드이사장

이
 송
 김
 노

정
 인
 인
 경

식
 회
 선
 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라돈안전특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7. 17. 이원욱·강훈식·홍익표·박재호·
 안호영·김철민·이후삼·송옥주·정세균·
 김병관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7. 17. 심재권·신창현·박범계·김종대·
 고용진·설훈·전현희·강창일·유승희·
 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8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8. 송옥주·금태섭·기동민·김성수·
 송갑석·신창현·이상현·이후삼·임종성·
 정세균 의원 발의)

7월 19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2. 문진국·원유철·정갑윤·박명재·
 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송희경·
 윤한홍·김선동·이철규·김규환·곽대훈·
 김석기·곽상도·김용태·정동영·임이자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문진국·정갑윤·원유철·박명재·
 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김선동·
 이철규·김규환·곽대훈·김석기·곽상도·
 임이자·임종성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신보라·김광림·김성원·이만희·
 함진규·김태흠·권성동·정점식·이철규·
 김석기·홍문표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2. 곽대훈·정태옥·김성찬·김정재·
 이종배·이종구·김기선·정유섭·이은권·

윤상직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우원식·김현권·인재근·기동민·이원욱·홍의락·김성환·이학영·김종훈·오영훈·이수혁 의원 발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이상민·이종걸·조승래·유성엽·오영훈·김두관·여기구·이용득·노웅래·이철희·도종환·민병두·김종민·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4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신창현·김철민·맹성규·서영교·윤준호·서삼석·김병기·노웅래·윤호중·우원식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김민기·강창일·김영호·김철민·노웅래·박범계·심기준·안민석·이재정·인재근·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김선동·민경욱·문진국·정운천·권성동·추경호·이양수·김정재·정태욱·정갑윤 의원 발의)

7월 26일 회부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임이자·박명재·문진국·추경호·최교일·김수민·강효상·송희경·송언석·원유철·한정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임이자·장석춘·윤종필·원유철·문진국·김승희·박명재·송희경·강효상·송언석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임이자·장석춘·윤종필·원유철·문진국·김승희·박명재·송희경·강효상·송언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9일 회부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설훈·이동섭·김민기·윤일규·김정호·오영훈·한정애·손혜원·신창현·김해영 의원 발의)

7월 31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김수민·신용현·정병국·이동섭·임재훈·김중로·윤한홍·강길부·조경태·유의동 의원 발의)

8월 1일 회부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송옥주·이상현·강훈식·이후삼·금대섭·송갑석·이원욱·정세균·신창현·전혜숙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전현희·조정식·심재권·심기준·이용득·한정애·이학영·안호영·노웅래·강병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임이자·원유철·추경호·박명재·김승희·유민봉·김광림·송희경·김용태·이종구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8. 2. 신창현·임종성·이개호·정춘숙·설훈·김정호·김영춘·김병기·김영호·백혜련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8. 2. 이명수·김명연·최연혜·윤종필·박명재·김성원·홍문표·이은권·강석진·

김태흠·김성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8. 2. 신창현·노웅래·송옥주·서영교·강훈식·이재정·고용진·김병기·권칠승·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8. 5. 강효상·심재철·김상훈·곽대훈·박성중·윤상직·김선동·엄용수·윤종필·송희경·전희경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8. 5. 맹성규·강훈식·기동민·김부겸·남인순·박완주·박찬대·서영교·소병훈·윤소하·이규희·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8. 6. 이찬열·김종희·이동섭·위성곤·김광수·유승희·유동수·안민석·김철민·인재근·채이배 의원 발의)

8월 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8. 9. 윤상현·이은권·김성원·서청원·성일종·정유섭·원유철·윤영석·윤종필·김태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8. 9. 이원욱·금태섭·유동수·어기구·최운열·조응천·윤후덕·서영교·민병두·전혜숙·김병욱·고용진·윤준호·안호영·김현권·김철민·김병관·이규희·김한정·정성호·노웅래·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2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8. 12. 임이자·장석춘·유민봉·윤종필·원유철·박인숙·문진국·박명재·추경호·이종구 의원 발의)

8월 13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송옥주·김경진·김경협·김민기·

김병기·송갑석·신창현·윤관석·이원욱·전혜숙 의원 발의)

8월 14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8. 14. 송옥주·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성수·김병기·송갑석·윤관석·이원욱·전혜숙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9. 8. 14.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남인순·여영국·김종훈·장정숙·송옥주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9. 8. 14.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남인순·여영국·김종훈·장정숙·송옥주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8. 14.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남인순·여영국·김종훈·장정숙·송옥주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8. 14.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남인순·여영국·김종훈·장정숙·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8월 16일 회부됨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16. 정부 제출)

8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김승희·박덕흠·박명재·김명연·김상훈·이명수·임이자·박성중·신보라·김성찬·이종배 의원 발의)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8. 오제세·김현권·설훈·김상희·김정우·서삼석·이찬열·강훈식·이개호·전혜숙 의원 발의)

7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9. 이철규·정갑윤·김석기·정진석·김도읍·곽대훈·신보라·정운천·문진국·윤상직 의원 발의)

7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8. 2. 박홍근·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웅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 발의)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8. 5. 이원욱·강훈식·김영진·윤후덕·정세균·송옥주·송갑석·김성수·김병기·안호영 의원 발의)

8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신창현·윤준호·김영춘·어기구·서삼석·박정·노웅래·우원식·서영교·소병훈·강훈식 의원 발의)

8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정진석·장석춘·엄용수·김석기·윤한홍·백승주·송석준·이은권·이채익·성일종·이명수·김태흠·추경호·김세연·김재원·임이자·이철규 의원 발의)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